

朝鮮時代 實錄의 染蠟에 관한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Paper of
Chosun Silrog Coated with Purified Beeswax

裴賢淑 (Pae, Hyon-Suk)*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朝鮮朝 實錄의 管理 | <참고문헌> |
| 3. 舊 全州史庫本 實錄의 染蠟 | |

< 초 록 >

본고는 『朝鮮實錄』의 染蠟에 대해 고구한 것이다. 종이에 염랍을 하면 강인하면서 투명해지고, 아울러 방습의 효과가 있으므로 실록에 염랍한 것이다. 모든 실록이 염랍된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오직 舊 全州史庫本만 염랍되어 있다. 종래 이에 대해 임진왜란 이전에 역대 실록 제작 당시 각각 염랍된 것으로 추정하였었다. 필자는 실록의 조선시대 관리양상에 대해 사초의 관리, 사가의 관리, 실록의 관리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염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염랍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實錄廳儀軌』를 참조해서 실록을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실록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염랍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知事 尹承吉은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한 관원으로서 35년 이후에 완성된 복인본과 그 다음의 『宣祖實錄』 편찬에도 참여하였지만 염랍의 전통은 계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조부터 실록을 염랍했었다면 사관은 전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계승했을 것이다. 그러나 『宣祖實錄』은 염랍되지 않았으므로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은 염랍되지 않은 것이다.

2. 정족산에 파견된 사관은 실록을 점검해서 形止案을 작성할 때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은 염랍되었으나 복인본 이후는 염랍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조 39년(1606) 복인본의 봉안 이후 숙종 25년(1699)까지 1세기 동안 정족산 실록을 적어도 50차례나 점검하고 형지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진주본은 염랍되었으므로 이후 실록도 염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 구 전주사고본 실록의 관리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改粧, 改絲, 改櫃, 修補, 染蠟한 점이다. 인조 22년(1644)과 현종 6년(1665)에는 전권 또는 부분적으로 수보하였고, 현종 5년(1664)에 3차례에 걸쳐 改粧, 改櫃, 改絲하였으며, 현종 6년(1665)에는 落卷과 落張을 考出하여 이듬해 적상산에서 등출해서 정족산에 봉안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숙종 25년(1699)에 염랍한 것이다.

4. 염랍할 때의 사관은 奉敎 朴弼明이었다. 朴弼明의 문집이나 기록의 전례가 확인된 것이 없어서, 朴弼明이 염랍할 때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원래 염랍이 되어 있던 舊 全州史庫本에만 덧칠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염랍된 실록 전체에 염랍이 과도하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괄

* 계명문화대학 서지학전공 교수(hspae1977@empal.com)

접수일: 2012년 9월 1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의 난으로 손상된 舊 全州史庫本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複印本을 제작하고, 여러 차례 修復하고 修補하다가 숙종 25년(1699) 舊 全州史庫本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것으로 추정한다. 후일 자세한 기록이 발견되길 기대한다.

要語: 染蠟, 實錄, 全州史庫本, 朴弼明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study the history of perfect maintenance of the Chronological Annals(實錄) for the Chosun dynasty. After the Japanese invasion(1592), the Annals enshrined in the Historical Deposit Libraries(史庫) in the Local government office must have been moved deep into the mountains. For the protection of these collections, they needed the help of the Buddhist monks.

The Bureau of State Records(春秋館) dispatched officials irregularly to keep, enshrine, move, return, consult the Annals when they met a matter of great consequence, change the damaged covers, change the thread of the Annals, change the wooden boxes, and repair the library building.

The practice of oiling the paper in order to keep it semi-translucent or moisture-proof goes back at least to 5-6 century in East Asia. But the papers coated with beeswax in Korea were not handed down except the Ann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n and why they coated with beeswax on the Annals published before 1592.

For the first step, I analysed the records on maintaining of historical materials, buildings of the Historical Deposit Libraries and the Annals themselves. Consequently I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Annals enshrined on Jeonju Historical Deposit Library(全州史庫) were not coated with purified beeswax before 1592. These Annals were coated with purified beeswax in 1699. The reasons are ;

Som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Bureau of State Records who compiled the Annals for King Myungjong(明宗實錄) also participated in printing of the Annals in 1606 and compiling the Annals for King Sunjo(宣祖實錄). But they did not coat the Annals with beeswax after 1600.

The official who accredited to the Historical Deposit Library in Mt. Jeongjok(鼎足山史庫) had made detailed reports on the books to the King, and probably would have reported on the books coated with beeswax. But records on coating with beeswax have not been found.

By contrast the Annals enshrined on Jeonju Historical Deposit Library were repaired on the whole books or small parts in 1644 and 1665. They changed the damaged cover, the thread and the wooden boxes, checked the missed volumes and pages in 1644. The following year they filed and copied the missed volumes and pages. Finally they coated with beeswax on the Annals enshrined in Jeonju Historical Deposit Library especially. The official who carried out this mission was Park Pil-Myung.

Key words: Oiling Paper, Beeswax, Silrog

1. 緒 言

『朝鮮實錄』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술한 연대기로서 단절됨이 없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더구나 실록 이외에 조선시대 실록의 제작 과정을 기록한 『實錄廳儀軌』, 실록을 관리한 기록인 『形止案』, 실록을 편찬한 관원의 명단인 『實錄廳題名記』가 시기별로 남아 있어서, 조선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실록의 편찬, 간행, 보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실록은 사료관리, 편찬, 보관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중대한 사서의 실물이다.

지금껏 실록에 대해 사료관리, 편찬, 간행, 보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된 바 있다. 조선 조정은 실록을 만세에 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은 실록을 편찬할 때 필수적인 사료부터 관리했고, 이들 사료를 토대로 편찬한 실록을 관리해왔으며,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사각도 관리하였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구 전주사고본 실록의 染蠟에 대해서는 좀 더 고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고자 문제를 제기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이에 『朝鮮實錄』을 관리한 양상으로 우선 史草, 史閣과 實錄의 관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구전주본 실록의 染蠟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朝鮮朝 實錄의 管理

고려시대에도 외사고를 두고 실록을 분장하였으나 사각의 관리와 수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말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여러 차례 안전지대로 소개한 기록은 전래되고 있어서, 고려시대에도 실록 보존을 위해 간단없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실록과 사고제도를 계승하였으나,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그 요점은 조선시대 실록관리의 주체는 춘추관이었으며,

그 대상은 史草, 實錄과 史閣이었다.

2.1 史草의 管理

사관의 주된 평상업무는 時政記와 史草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시정기는 시정에 있어서 역사의 자료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채록하는 것으로, 사관이 매일 승정원과 춘추관에 직속하면서 왕의 청정과 경연에 입시하여 작성한 사초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경외 대소 관청의 겸직사관이 각각 시행사로서 정령과 관계 있고 후세에 권고와 훈계가 될 만한 문건을 적어서 보내온 사초도 관리하였다. 사관이 작성하는 사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時政記」와 「房上日記」, 등인데, 이는 춘추관에 비치되어 사관들이 열람할 수 있는 사관의 기록이다. 다른 하나는 직무상의 기록이지만 공개되지 않고 사사로이 수장하는 家藏史草이다.

시정기는 사관이 견문 등 시행사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연월순으로 편차하면, 당상관이 이를 수정해 시정기의 정본을 만들었다. 시정기의 정본이 완성된 후 부분은 포쇄년에 충주사고에 수장하였으며, 매년말 왕에게 정본의 책수를 보고하였다. 3년마다 이 시정기를 인쇄하여 춘추관, 의정부와 사고에 수장하도록 한 규정¹⁾이 있었다. 또한 직무상의 기록이지만 공개하지 않고 사사로이 수장하는 가장사초는 춘추관에 수장된 사초의 부분이 아니었으며, 이도 실록편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다. 가장사초는 당대 인물 즉 왕을 위시하여 대신들의 현부, 득실과 관계된 내용을 공의를 토대로 상세하게 직서한 것이다. 이 사초의 내용은 실록이 편찬될 때까지 다른 사관들에게도 누설되지 않았다. 당해 사관 또는 그 후손은 각각의 가장사초를 평소에 관리하였다가 실록 편찬시에 제출하였다. 이런 사초의 관리 임무도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여기까지는 아직 실록이라 칭할 수는 없다.

1) 「經國大典」(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卷3. 禮典. 藏文書. 284.

“... 春秋館時政記 崇文院文書 每三年印藏本衙門議政府及史庫 ...”

2.2 史閣의 管理

실록의 편찬이 완료되면 실록을 관리하고, 실록을 보관하는 사각도 관리해야 한다. 태종 13년(1413) 『太祖實錄』이 완성되었을 때는 궁내 사관에 수장하였으므로 조선의 사고는 京史庫밖에 없었다. 세종 13년(1431) 『太宗實錄』이 완성되자 『恭靖王實錄』, 『太宗實錄』과 함께 춘추관과 충청도 충주 읍성내에 설치한 사고에 봉안함으로써 外史庫가 설치된다. 이 충주사고는 『高麗實錄』을 보관한 開天寺 사고와는 별개의 사고로 읍성 내에 두었으므로, 충주사고를 수호하던 인원은 守護官 5명, 別色戶長, 記官과 庫直이 각 1명이었다.²⁾ 이후 2부를 더 필사해서 세종 27년(1445)까지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도 사고를 설치하고 부분을 분장하였다. 이들 외사고는 산중에 건립된 외사고에 실록을 봉안하던 고려의 제도와는 달리 읍성 안에 건립된 사고에 봉안했기 때문에 지방관아에서 수호했다. 따라서 수호군사의 수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임진왜란 전의 사각에 배치되었던 수호군과 수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임진왜란으로 성주와 충주의 실록은 소실되고 전주사고의 실록만 재난을 면하였다. 이에 수많은 논의와 곡절을 거쳐 결국은 複印하게 되었다. 선조 39년(1606) 실록의 복인이 마무리될 즈음 이를 분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각을 건립하였다. 이때 폭도와 적군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험준한 산중에 사각을 건립하였으므로, 사각과 실록의 수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예조와 춘추관의 관원이 협의하여 <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³⁾ 이 절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실록에는 기록된 바 없다. 그러므로 사각 수직 절목의 내용은 『朝鮮寺刹史料』에 수록된 <禮曹完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의 절목에는 춘추관사고의 수직은 춘추관과 병조에서 공동으로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조에서 부장과 군사 4명을 파견했고, 춘추관에서는 낭청 1명이 서리, 사령, 고직 각 2명을 대동하고 수직하였다. 외사고의 수직은 인근에 사는

2) 『世宗實錄』影印本. 卷149. 地理志. 冊5. 625下.

3) 『宣祖實錄』影印本. 卷198. 冊25. 188下左. 39年 4月 丙寅.

착실한 백성 4호를 택해 일체의 身役이나 雜役을 면제시켜 오로지 사고만 책임지고 수직하되, 2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 참봉은 행정적으로 사각을 관리하였으며, 이들은 각도에서 차출되었다. 사고마다 예조의 帖文을 받은 참봉 2명씩 교대로 수직하였는데 1년마다 교체되었다. 또한 僧軍은 사고마다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20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예조에 보내면, 예조에서는 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總攝을 임명하고 수직을 통솔하게 하였다. 위의 규정을 어긴다면 각관의 수령들이 중벌을 받도록 규정되었다.⁴⁾

이와 같이 사각의 수직과 수호는 참봉, 수호군, 실록수호사찰의 총섭, 승군이 담당하였고, 이들의 급료를 위한 位田도 지급했다. 實錄守護總攝은 승직으로서 실록수호사찰의 주지가 담당하였다. 실록을 심산에 수장하였으므로 승군이 수직하게 되었고, 이로서 사고수호에 승군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고려 고종년간 해인사에 사고를 설치했던 전통이 부활된 것이며, 조선후기에 외사고에 수호사찰을 지정하게 된 연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산에 실록을 봉안한 것은 세조년간 梁誠之의 건의가 선조년간에 실현된 것이며 장소만 변경된 것이다. 이 건의가 뒤늦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을 당해 국가의 존망에 승군이 크게 기여했고, 전란중에 실록을 정읍 내장산의 암자와 영변 묘향산 보현사에 이봉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고를 심산에 설치하게 되었으니 수호하기 위해 승도의 힘이 필요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복인실록을 분장한 초기에는 <京外史庫守直節目>과 같이 엄격하게 시행됐으나 시일의 경과로 차차 해이해지게 되었다. 즉 사고에 소속된 승려, 역졸과 군사는 그 신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는데도 신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승군도 위전을 뺏기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흉년이 들어 승도의 이산이 있었고, 사찰은 황폐되어 사고는 막중하나 수직할 승도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다시 해이해졌고, 숙종 43년(1717)에 다시금 춘추관 당상이 회동하여 <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였다.⁵⁾ 이때 마련한 절목도 인조 8년

4) 『朝鮮寺刹史料』(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冊下. 68-71. 禮曹完文.

『增補文獻備考』影印本(서울: 東國文化社, 4290) 冊下. 584上左.

5) 『朝鮮寺刹史料』(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冊下. 65-68. 史庫節目.

(1630)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사목에 따라 수직하고 오로지 수호에만 전념하게 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족산사각은 경중과 가장 가까운 까닭으로 업무차 오가는 관리의 왕래가 많아 스님의 업무가 번중하고 승도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영조년간이 되자 날로 이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다른 사찰의 승려는 아예 피해서 정족산에는 오지도 않으니 남은 승도는 10명도 안되어 몇 년 지나면 남을 승려가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정족산 아래의 船頭浦에 있는 세수 수십석지기를 傳燈寺에 주면 승도가 모일 것으로 보아 상중하 답을 막론하고 20석지기를 내려줄 것을 명하였다.⁶⁾ 고종말기에 정족산사고에는 별장과 승군 50명이 수직한 기록이 있다.⁷⁾

오대산사고도 수직과 수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조 8년(1630)에 실록수호총섭이었던 雪淸과 應元 등이 所志를 제출한 결과 다시금 수직승들의 신역 및 잡역을 면제하게 하고, 비록 왕릉을 쌓을지라도 차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수호사찰에 손상이 있으면 여러 읍에서 수리를 돕게 하였다.⁸⁾ 그런데도 또 해이해지게 되어 영조 원년(1725) 오대산실록을 포쇄하고 온 趙明澤이 靈鑑寺에 승도, 참봉, 수호군 수십명이 수직하면서 수호하고 있는데, 이 암자가 퇴락하여 조속히 중수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호군 60명도 잡역에 동원되는 폐단이 많아 도망하여 지금은 40명도 채 남아있지 않으므로 잡역을 면제시켜 수호만 착실하게 전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⁹⁾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고종년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대산사고에는 수호군 60명, 승군 20명이 수직한 바도 있다.¹⁰⁾

더욱 많은 인원이 수직한 사고는 적상산사고이다. 인조 10년(1632) 적상산사고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적상산사고에는 守僕 12명(매월 2명씩 수직), 軍兵 84명

6) 『傳燈寺本末寺誌』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8) 4-6.

7) 『江華府邑誌』寫本. [年紀未詳] 張6.

8) 『朝鮮寺刹史料』(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冊下. 68-71. 禮曹完文.

9) 『承政院日記』, 英祖 元年 11月 7日(辛丑) 원본604책/탈초본33책(38/38).

10) 『江原道江陵府誌』寫本. [年紀未詳] 張11表.

(매월 7명씩 수직), 승군은 승장, 上佐 등 16명이 수직하였다.¹¹⁾ 더구나 적상산성은 광해군년간에 청국군을 대비해서 쌓은 군사적 요충이었기 때문에 사고수호 외에 산성수호를 위한 군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원년(1864) 적상산 수호사찰인 안국사가 퇴락하여 중수할 경비마련을 위해 空名帖 300장을 전라감영에 하송하여 경비를 조달하게 하였다.¹²⁾ 고종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참봉 2명, 총섭 1명, 代將 1명, 和尚 1명, 승군 24명, 別將 1명, 守僕軍 131명(매월 11명씩 防番), 射夫 24명(매월 2명씩 防番), 監官 1명, 別破軍 49명(매월 12명씩 防番)이 수직하였다.¹³⁾ 이 비용은 부근의 무주, 진산, 금산, 용담, 운봉, 진안, 장수에서 내는 정액의 조세로 충당되었다.

태백산사고 창건 당시는 奉化縣이 책임을 맡아 승군 30명을 정원으로 奉化縣 覺華寺, 順興 浮石寺, 禮安 龍壽寺의 승려를 동원하였고, 奉化縣, 安東, 禮安, 榮川, 順興邑에서 60명의 俗軍을 차출하여 교대로 수직하게 하였다. 인조 16년(1638) 춘추관의 보고에 의하면 태백산사고는 수목이 우거진 가운데 있어 산불의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관리들이 사목을 준행하지 않아 참봉은 급료도 받지 못하고 스님들은 위전을 빼앗겼다. 이 상태로는 사고수호의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례를 조사하여 급료와 급전할 것을 청하였고 왕은 그대로 따랐다.¹⁴⁾ 정조 22년(1798)에 이르러 사찰은 피폐해져 승려가 이산하고, 각읍의 속군도 도주하여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 되었다. 이에 봉화현감 蔡弘直이 봉안, 수리의 경비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疆界移割을 건의하였다.¹⁵⁾ 이런 건의는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순조 11년(1811) 안동의 春陽面을 할양해주면 사고수호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춘양을 봉화에 할양해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강계의 이할은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였다.¹⁶⁾ 전에도 이런 논의가 여러 번

11) 茂州縣, 『崇禎五年六月 日全羅道茂州縣赤裳山城條陳成冊』 寫本. [仁祖 10(1632)] 張 2-3.

12) 『承政院日記』 影印本. 冊1. 452上中. 高宗 元年 10月 5日.

13) 趙秉瑜, 『赤城誌』 寫本. [高宗 35(1898)] 卷5. 古蹟. 張5.

14) 『仁祖實錄』 影印本. 卷37. 冊35. 35上左. 16年 9月 辛未.

15) 『承政院日記』, 正祖 22年(1798) 11월 8일(丁卯) 원본1800책/탈초본95책(22/28).

16) 『承政院日記』, 純祖 11年 3月 19日(丁卯) 원본1995책/탈초본105책(29/32).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태백산사고 수호경비에 대한 대책으로 覺華寺의 승군에게는 오대산, 적상산, 정족산 사고의 예가 있지만 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이므로 요미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¹⁷⁾

이는 날이 갈수록 승려와 담당자의 업무가 번중하게 되자 승도의 이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사정상 시행되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의 경우 수호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봉화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읍이어서 사고수호를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순조 30년(1830) 각화사가 퇴락하여 수리하는데 경비마련을 위해 공명첩 500장을 하송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200장을 하송할 것을 명하게 된다.¹⁸⁾ 고종 원년(1864)에 태백산의 각화사가 퇴락하여 수리하는데 각화사는 안국사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여 공명첩 400장을 하송하고 감영과 본읍에서 경비를 구하게 하였다.¹⁹⁾ 이렇게 수개된 각화사는 고종 17년(1880) 가을에 발생한 화재로 승려가 머물 곳이 없게 되어 사고수호에 지장이 있었다. 불탄 각화사의 중수비용을 마련하도록 조정에서는 공명첩 500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²⁰⁾ 결국은 승도와 속군은 이산되어 고종말기에는 태백산사고에는 25명의 수호군이 있었다.²¹⁾ 봉화는 이와 같이 태백산사고의 수호가 매우 벅찼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사고를 수호할 절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에 소속된 승려, 역졸, 군사는 신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는데도 신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승군의 수에 있어 사고마다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승군도 위전을 뺏기게 되었으므로 사고관리경비는 인근 읍에서 내는 조세로 충당하게 되었다. 참봉의 官料나 승려의 位田 지급이 사목대로 준용되지 않음은 국가재정의 궁핍과 문란에서 온 것이었다. 조선조에서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실록을 수호하는 사찰의 주지에게는 승직까지 주어서 실록각을

17) 『承政院日記』, 純祖 11年 3月 19日(丁卯) 원본1995책/탈초본105책(29/32).

18) 『承政院日記』, 純祖 30年 4月 20日(戊寅) 원본2252책/탈초본114책(22/22).

19) 『承政院日記』, 高宗 元年 11月 3日(庚子) 원본2683책/탈초본127책(9/13).

20) 『承政院日記』, 影印本. 冊7. 322上右. 高宗 17年 11月 29日.

21) 『輿地圖書』,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73) 卷下. 奉化. 692上左.

수호하도록 하였고, 퇴락된 사찰의 중수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했음도 알 수 있다.

광무 2년(1898) 1월 칙령 제2호로 강화부, 양주, 강릉, 봉화, 무주 등 군에 있는 사고의 수호건을 반포하였다.²²⁾ 곧 이어 광무 4년(1900) 1월 칙령 제7호로 강화부, 양주, 강릉, 봉화, 무주군 소재 사고 규정 중 개정안을 반포하였다.²³⁾ 이로써 종래 춘추관에서 담당하던 사고에 관한 업무를 광무 2년(1898)부터 의정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3년에 한 번 포쇄하던 정식을 다시 확인하였고, 3년마다 궁내부에서 비서랑을 파견하여 포쇄하고 노자는 궁내부에서 지급하였다.²⁴⁾

참봉이 담당한 업무는 강우량이 많거나 바람이 심하여 실록각에 비가 새어들어 막중한 사적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사각을 봉심하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사각에 이상이 있거나 비가 센 곳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춘추관은 사관을 파견하여 실록각을 봉심하고 수개하였다. 사각을 수개할 때는 실록을 안전한 장소로 이안하고 수개를 하였으며, 실록을 신설사각으로 이봉할 때, 난을 피해 옮겼다가 사고에 환안할 때, 실록을 복원하고 환안할 때, 화재나 중수를 위해 다른 곳에 옮겨놓았다가 다시 환안할 때는 반드시 실록과 서적을 거풍하고 점검하였다.

2.3 實錄의 管理

이상에서 실록을 봉안한 史閣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실록의 관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실록을 몇 차례 안전지대로 소개한 기록은 있지만, 전래되는 포쇄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충렬 왕년간 直史官 秋適이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던 실록을 포쇄한 것이 전래되는 최고의 기록이다.²⁵⁾ 공민왕 11년(1362)에는 홍건적이 침입한 후 사고는 파괴되고

22) 『高宗實錄』影印本. 卷35. 冊2. 629. 建陽 2年 7月 15日.

『高宗實錄』影印本. 卷37. 冊3. 29. 光武 2年 1月 12日.

23) 『高宗實錄』影印本. 卷40. 冊3. 138. 光武 4年 1月 21日.

24) 官報. 제846號. 光武 2年 1月 14日. 勅令2號.

25) 徐居正, 『東文選』影印本 (서울: 慶熙出版社, 1966), 卷6. 69. 洪侃送秋玉蟾曬史海印寺.

실록은 노지에 산재되었으므로 사관을 파견하여 수습해야 한다는 留都監察司의 상소로, 郭樞를 개성 사관에 보내 해인사로 옮기게 한 바 있다.²⁶⁾ 우왕 9년(1383) 수찬 裴仲員이 七長寺의 실록을 曝曬한 기록²⁷⁾도 있다.

조선시대초에 『高麗實錄』을 관리한 양상은 2회 고출, 2회 취래, 2회 포쇄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고출은 태종 4년(1404) 4월에 河崙과 權近에게 명해 尹瓘이 東女眞을 격파하고 비석을 국경에 세운 사실을 충주사고의 실록에서 초록해 오게 한 바²⁸⁾ 있고, 동년 12월에 역시 河崙과 權近에게 명해 『高麗實錄』에서 관제를 고출하도록 충주사고에 파견한 기록²⁹⁾이 있다. 취래의 경우는 태종 12년(1412) 4월 예조에서 송조의 <樂圖>를 참고하기 위해 충주사고의 『聖宋頒樂圖』를 가져왔고,³⁰⁾ 세종 3년(1421) 1월에 『忠州史庫書籍簿』를 열람하고 필요한 책을 奉教 鄭周生을 파견하여 가져오게 한 바 있다.³¹⁾ 포쇄는 태종 4년(1404) 6월에 고사를 준수하여 충주사고의 실록을 포쇄하였고,³²⁾ 태종 16년(1416) 7월에도 同副代言 李明德이 구례에 따라 사고수장 서책을 포쇄한 바 있다.³³⁾ 고사를 준수하였다거나 구례에 따라 포쇄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포쇄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실록이 간행되자 이들 실록을 매우 엄중하게 관리하였다. 당시의 관리 는 현대 도서관의 관리와는 달리 실록을 경사고나 외사고에 奉安한 후 曝曬, 點檢, 修補, 移安, 還安, 取來, 考出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항상 실록각의 상태, 서적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였다. 포쇄는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봉안, 이안, 환안, 취래, 고출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포쇄 후에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의 회수가 더욱 많은데 비해, 부정기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26) 『高麗史』影印本(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卷40. 冊1. 797과 卷112. 冊3. 451. 白文寶.

27) 權近, 『陽村集』, 木版本[顯宗 13(1672)] 卷16. 張2-3. 送裴仲員修撰撰史七長寺序.

28) 『太宗實錄』, 影印本. 卷7. 冊1. 294下右. 4年 4月 丁丑.

29) 『太宗實錄』, 影印本. 卷6. 冊1. 316下左. 4年 12月 丙戌.

30) 『太宗實錄』, 影印本. 卷23. 冊1. 630上左. 12年 4月 丁巳.

31) 『世宗實錄』, 影印本. 卷11. 冊2. 420上右. 3年 1月 庚午.

32) 徐居正, 『東文選』, 木版本. [中宗年間] 卷93. 張1-2.

33) 『太宗實錄』, 影印本. 卷32. 冊2. 129上左. 16年 7月 庚戌.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강화사고의 경우는 정기적인 점검보다 부정기적인 점검이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부정기적으로 행한 점검은 실록의 봉안, 고출, 이안, 환안, 취래, 봉심, 염랍, 개괘, 개사, 개장, 고출과 실록각의 수개를 할 때 포쇄하면서 시행하였다. 부정기적인 개고와 점검 가운데 가장 많이 시행된 것은 조정에 대사가 있을 때 전례를 참고하여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실록에서 필요한 기사를 고출할 때 시행된 것이다. 고출할 때도 수장되어 있는 전체 서적에 대하여 반드시 포쇄도 하고 형지안을 작성했다. 많은 경우에 정족산사고에서 고출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강화도가 경중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정족산의 사책이 산일된 결과로 형지안을 살펴 필요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포쇄, 봉안, 수개와 겸해서 태백산사고나 적상산사고에서도 고출하였다.

실록의 편찬이 끝나 사고에 봉안할 때에도 포쇄와 점검을 겸했다. 실록 이외에 어제와 어필을 봉안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정족산본의 결본을 보충하기 위해 적상산사고의 실록을 등출하면서도 점검하고 포쇄를 하였다. 정족산사고의 실록은 개장, 개괘, 개사, 염랍하면서 점검한 바도 있다. 이외에 조정에 대사가 있을 때 전례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서 사고형지안을 살펴 필요한 서적이 수장되어 있을 때는 경중으로 취래한 경우에도 점검하였다.

이러한 부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정기적으로 포쇄하고 점검하였다. 정기적인 포쇄와 점검은 단순히 실록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거풍하면서 점검한 것이다. 경중에서 지리적으로 먼 사고의 실록은 주로 정기적으로 포쇄 후에 점검한 경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고의 실록은 정기적인 점검보다 오히려 부정기적인 점검의 경우가 훨씬 많았다.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사각의 문을 封印하기 전에 반드시 수장서적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여 形止案을 작성해서 1건은 당해사고에 비치하고, 1건은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실록을 봉안할 때는 춘추관에서 새로 봉안하는 실록의 形止案을 미리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형지안에는 포쇄, 고출, 봉심시에 작성한 형지안과는 달리 봉안되는 실록의 서명, 권수, 권수, 책수, 실록찬수관원의 관직명, 성명만을 기록, 수결

하고, 관인을 날인하였다.

외사고에 당도하여 신인실록, 의궤, 형지안, 신인서적을 봉안하고 기존의 실록을 점검한 후, 별도로 당해 사고의 실록포쇄형지안을 작성하였다. 형지안은 실록을 봉안할 때 이외에도 포쇄, 봉심, 이안, 환안, 취래, 고출 및 실록각의 수개시에 점검하고 작성한 보고용의 목록인데, 현대적인 의미로는 ‘장서점검부’라고 할 수 있다. 사고형지안은 사고를 개폐할 때에 사관을 특별히 파견하여 장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 일종의 사고 장서 실태조사보고서이다. 어떤 목적을 수행했을 지라도 실록각의 문을 열 때는 항상 먼저 개고일시를 추척하였다.

조선시대 사고의 개고는 도합 634회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 목적은 봉안 120회, 포쇄 267회, 고출 161회, 이환안, 수개 등 다른 목적과 동시에 포쇄한 86회의 순이다. 사고별로는 충주사고 15회, 전주사고 16회, 성주사고 12회, 춘추관 93회, 강화사고 167회, 적상산 106회, 태백산 102회, 오대산 98회, 해주와 향산 20회, 미상 5회 개고되었으며, 파견된 관원은 한림이 375회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행해졌다. 전래되는 형지안은 전주사고 2책, 해주 사고 1책, 향산사고 12책, 오대산 102책, 적상산 104책, 강화사고 142회, 태백산 99책, 도합 462책으로 강화사고의 형지안이 가장 많이 전래되고 있다.³⁴⁾

3. 舊 全州史庫本 實錄의 染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자손만대에 전승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례의 하나는 구 전주사고본 실록에 染蠟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실록은 보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염랍한 후에 다시 改裝하거나, 改絲하고 필요에 따라 改櫃하기도 하였다.

34)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201.

3.1 染蠟이란

조선시대에 실록에 蜜蠟을 입힌 바 있으니 우선 밀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밀랍은 蠟이라고도 하는데, 동식물이나 광물에서 나는 유성의 물질이다. 백랍, 황랍, 경랍, 밀랍, 목랍 따위가 있다. 보통은 꿀을 빼낸 벌집을 물과 함께 끓이고 냉각시켜 응고시킨 것을 말한다. 보통은 황색이지만, 표백하면 백색이 된다. 밀랍은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蠟燭, 蠟細工에 사용되었고, 布 또는 紙에도 포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미 漢代부터 黃蘗汁을 염색해 줌을 방지할 수 있는 黃蘗染紙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蠟[紙魚]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낙엽교목인 황경나무[黃蘗] 껍질로 물들인 종이다. 이 종이는 쓴 맛이 강해 蠟이 먹지 않으므로 중요문서와 서적 제작에 사용되었다. 고로 돈황석실에 보존된 당대사경은 대다수 蠟염된 종이다.

唐代부터 黃蘗染紙에 고르게 밀랍을 입히기 시작하여 광택 있고 아름다운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 종이를 硬黃紙라고 한다.³⁵⁾ 또는 黃硬紙라고도 하는데, 硬黃紙는 예술가공지로 이름 높았다. 이 밀랍지는 반투명하고, 광택이 있고, 매끄러운 종이다. 밀랍은 습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종이는 반투명하여 서화작품의 모본 제작이나 사경에 많이 사용되었다. 경향지의 대표적인 현존본은 북경도서관의 初唐寫本인 「妙法蓮華經·妙音菩薩品」 제24권, 당 용삭 3년(663) 皇甫知岌이 필사한 「春秋穀梁傳」 桓公第三, 開元 6년(718) 도교사경인 「無上秘要」 권52, 돈황에서 출토된 초당시대의 「大般涅槃經」 권2, 요녕박물관 수장의 왕희지의 「萬歲通天帖」의 당대모본이다.³⁶⁾

밀랍을 발라 가공한 종이는 포장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습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蠟紙는 밀랍의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밀랍을 입힌 종이 또는 글을 쓴 용도와 관련하여 파생된 용어가 여럿 있다. 방수하기 위해

35) [cited 2012. 08. 31. 22:00]. <<http://baike.baidu.com/view/3525488.htm>>.

36) [cited 2012. 07. 29. 16:50]. <<http://baike.baidu.com/view/3525488.htm#>>.

布帛과 紙에 蠟을 도포하는 것을 蠟引 또는 染蠟이라 하였다. 蠟引한 布 또는 木棉은 蠟布, 종이는 蠟箋 또는 蠟紙라고 하였다. 밀랍을 동그랗게 뭉쳐 만든 것이나, 그 속에 서신이나 서류 따위를 넣어 비밀 통신을 한 데서 밀랍으로 봉한 서신이나 서류는 蠟丸이라 하였는데, 친필 서신을 이르는 말로도 쓰였다. 蠟丸 속에 봉한 비밀문서인 蠟丸書, 비단에 써서 蠟丸 속에 봉한 문서는 蠟丸帛書 또는 蠟丸絹書, 蠟帛書라 하였다. 여기서 과생하여 아주 작게 쓴 楷書를 蠟丸體라고 한다. 또한 蠟丸 속에 봉한 문서인 蠟書, 蠟丸 속에 봉한 密詔인 蠟詔, 蠟丸으로 봉한 奏書인 蠟表 등이 있었다. 편지를 蠟으로 봉하는 것, 또는 납으로 봉한 편지는 蠟封이라 하고, 비단에 밀을 칠하고 原畫를 모사하는 일이나 蠟引한 종이의 책은 蠟本이라 하였다.

이에 관해 실제 쓰인 실례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다. 당의 대력 원년(766) 華州節度使 周智光이 監軍 張志斌을 죽이고 謀叛을 일으키자 代宗은 蠟書에 써서 셋길로 가서 郭子儀에게 명해 토벌할 것을 명한 일이 있다.³⁷⁾ 또한 병자호란 당시인 인조 14년(1636) 12월 留都大將 沈器遠이 火攻으로 승전했다고 蠟書로 보고한 기록³⁸⁾이 있다. 後梁 均王 龍德 원년(921) 晉나라가 변방에서 文禮의 蠟丸絹書를 여러 차례 노획하였으나 晉王이 사신 모두를 보내 돌려보냈다는 기록,³⁹⁾ 순조 9년(1809) 시험보기 직전 남모르게 초고를 만들어 蠟丸 속에 숨겨 과거시험장에 들어간 일,⁴⁰⁾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순절했던 사람의 후손인 安州 士人 林之煥이 순조 12년(1812) 3월 난이 일어나자 선천현감 金熾의 蠟丸之書를 몸에 감추고 전하러 가다 적에게 잡혔으나 불굴의 기절을 세우고 절사하자 임지환에게 증직하고 정려한 일⁴¹⁾이 있었다.

徐居正이 성종의 물음에 문종의 宸翰을 蠟紙에 모사하여 정치 圖를 만들어 후세에 길이 전하려고 한 바 있다고 아뢴 기록⁴²⁾이 있으며, 중국에 보낼 방물은

37) 劉煦, 『舊唐書』(서울: 景印文化社, 1977). 冊下. 卷120. 列傳 卷70. 郭子儀傳. 3463左.

38) 『仁祖實錄』影印本. 卷33. 14年 12月 29日(己亥) 影印本. 冊34. 661.

39) 司馬光,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上海: 古籍出版社, 1987), 1887上左.

40) 『純祖實錄』影印本. 卷12. 9年 11月 16日(壬申) 影印本. 冊47. 642.

41) 『承政院日記』純祖 12年 4月 2日(甲辰) 원본2014책/탈초본105책(10/21).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蠟紙로 싸고 다시 油席으로 싸서 가지고 가야 비나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성종 24년(1493) 9월에 同副承旨 權景祐가 書狀官으로서 중국에 갔을 때에, 말이 넘어지자 방물이 물속에 떨어졌는데, 즉시 묶은 것을 풀고 보니 油席만 젖었을 뿐이었고, 그 안의 蠟紙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기록⁴³⁾으로 보아 습기를 대비하기에는 안성맞춤의 종이였다.

또 정조 18년(1794) 9월 예조판서 閔鍾顯이 태백산 사고에 방치되어 있는 광해군 때의 사초⁴⁴⁾를 보았는데, 편찬하지 않고 두면 세월이 지나 파손되어 광해군 16년(1608-1623)간의 역사를 신빙할 곳이 없게 되고 명신과 재상의 節行과 言議가 다 인멸되게 되었으니, 춘추관에서 이 사초를 가져다 수정하여 『燕山君日記』의 예대로 蠟紙에 간인하여 각처의 사고에 보관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건의하였다.⁴⁵⁾ 납지는 기름종이이기 때문에 기름종이에 수성의 먹으로 인쇄는 불가능하다. 당시 민중현은 다른 실록은 모두 활자로 인쇄되었는데, 『光海君日記』만 活印되지 않았기 때문에 活印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록각을 수개할 때인 숙종 27년(1701) 형지안에 의하면 蠟膾 또는 蠟印⁴⁶⁾의 주기가 있는데, 蠟膾은 필사되어 있는 밀랍지, 蠟印은 인쇄되어 있는 밀랍지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밀랍지에 인쇄하면 수성의 먹이 배어 들 수는 없는 것이다.

실록의 책지 외에도 실록 제작에 밀랍이 사용되었으므로 『實錄廳儀軌』에 반영되어 있다. 『光海君日記』에는 황밀 5分,⁴⁷⁾ 『宣祖修正實錄』에는 印出諸具에 7錢, 粧册所用 6兩, 5兩3錢, 實入에 6斤,⁴⁸⁾ 『仁祖實錄』에는 綾花所用 1斤1兩,

42) 『成宗實錄』影印本. 卷160. 14年 11月 28日(丁巳) 冊10. 546.

43) 『成宗實錄』影印本. 卷282. 24年 9月 5日(丙申) 影印本. 冊12. 399.

44) 閔鍾顯은 광해군 때의 사초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은 중초본이였을 것이다. 『光海君日記』는 정족산과 적상산사고에는 정초본을 보관하였으나, 태백산사고에는 주목으로 교정한 중초본을 보관하였으므로 사초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숙종 12년(1686)과 정조 18년(1794)에 인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45) 『正祖實錄』影印本. 卷41. 18年 9月 30日(甲寅) 影印本. 冊46. 510.

『承政院日記』. 正祖 18年 9月 30日(甲寅) 원본1736책/탈초본92책.

46) 康熙四十年辛巳十月 日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寫本. [肅宗 27(1701)].

47) 崇禎七年六月日[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張18a.

48) 順治十四年丁酉九月日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寫本. [孝宗 8(1657)] 張37b, 38a, 38b.

實入에 13斤12兩 5錢,⁴⁹⁾ 『孝宗實錄』에는 粧冊匠所用 10兩, 每一冊裝縵衣次綾花所用 1兩, 實入에 4斤11兩,⁵⁰⁾ 『景宗修正實錄』에는 粧冊所入에 10兩, 每一冊裝縵所入에 5分式⁵¹⁾ 등등의 기록이 역대의 의례에 보이고 있다. 이외의 실록 편찬에도 황밀이 사용되었음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고서의 표지는 능화문으로 장식되었는데, 이때 밀랍이 사용되었다. 그 제작방법은 “잘 익은 치자를 1시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근 다음, 망이 고운 체로 걸러서 치자물이 노랗게 우러난 물을 한지에 고르게 바른다. 그리고 한지를 잘 건조시키고, 이를 2배첩하여 다시 건조대에 붙여 말린 다음, 다시 2배지+2배지를 배첩하여 4배첩지로 만들고, 표지판 크기에 맞추어 재단한다. 약간 축축하게 물을 뿌린 후 한지를 표지판 위에 적당히 놓고 돌로 표지판 문양이 드러날 때까지 두드린다. 문양이 보기 좋게 드러나면 밀랍으로 반들반들할 때까지 문지르고 적당한 상태가 되면 잘 말린 다음 인두로 다려 밀랍이 종이에 배이도록 하고, 적당한 크기로 재단하여 네 귀를 접어 손질하고 마지막으로 이면에 한지를 붙여 마무리한다.”⁵²⁾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적 상황에 밀랍은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2 實錄의 染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지 제작에 있어서 밀랍이 사용되었으므로 전통적으로 서적제작에 있어 밀랍의 사용은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실록표지 제작에 있어 후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 전주사고본의 태조부터 선조까지의 실록은 紺絹으로 장황한 실록이다. 이들 역대 실록은 인쇄가 완성되었을 때 각각 장황을 한 것이므로 동시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존 전주사고본 역대실록의 원표지는 무늬 없는 감견으로 장정되었음을

49) 『仁祖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221, 223.

50) 『孝宗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347, 349.

51) 乾隆四十三年戊戌二月日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寫本. [正祖 2(1778)] 張10a.

5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 옛 책의 아름다움』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5), 370. 표지만들기.

볼 수 있다.⁵³⁾ 감견표지의 실록이 임진왜란과 침수로 손상되어 개장할 때에는 황지로 대체되었다. 그렇다고 임진왜란 이전의 다른 사고의 실록이 모두 전주사고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실록을 감견으로 장황했을 수도 있고, 전주는 조선의 璿源大鄕이므로 특별히 감견본을 봉안했을 수도 있다. 임진왜란 이후 『宣祖修正實錄』부터는 처음부터 표지에 황지가 사용되었다.⁵⁴⁾

그런데 표지 외에 책지에도 밀랍한 경우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도 밀랍지를 알고 있었다. 즉 고려 문종 17년(1063) 거란이 대장경을 보내왔는데, 이때 전래된 『契丹藏』의 책지⁵⁵⁾는 아주 질긴 硬黃紙였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대장경 간행에 납지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납지본은 곧 구 전주사고본 실록의 책지에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납지를 서책 인출에 사용한 것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관리를 엄중하게 한 실록이지만 현실에 있어 장구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에 해이해진 기간도 있어 손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정소영 등은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실록 정족산본은 총 1,187권으로 이중 475권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밀랍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실록에 대한 보존상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밀랍본의 경우 생지본⁵⁶⁾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게 열화되었으며, 특히 밀랍 도포량이 많을수록 손상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⁵⁷⁾’고 하였고, 또한 ‘정족산본 중 일부는 책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한지에 밀랍을 처리하여 밀랍본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훼손상태가 심각한 약 10% 정도의 대부분을 밀랍본이 차지하고 있다. 훼손된 밀랍본의 경우 밀랍이 경화됨에 따라 변색, 갈라짐, 꺾임 등의 다양한 손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53) 裒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대구: 태일사, 2002), 213.

54) 裒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대구: 태일사, 2002), 208, 214.

55)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合編, 『應縣木塔遼代秘藏』(文物出版社, 1991), 12.

“… 三 … 壹, 遼藏十二單卷 … (二) 款式. 硬黃紙(藏經紙), 卷軸裝. 光潔堅韌, 入潢避蠹.”

56) 이 논문에서는 生紙를 염랍하지 않은 종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지란 도침하지 않은 종이를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염랍되지 않은 종이[未染蠟紙], 또는 搗砧紙, 熟紙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7) 鄭小英 등, “조선왕조실록 밀납본의 보존상태 조사,” 『보존과학연구』 25(2004), 119-132.

곰팡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관찰되었다⁵⁸⁾고 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김성수는 '1967년부터 훼손이 확인되었으나 실록의 보존·복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⁵⁹⁾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실록의 훼손이 확인된 것은 이미 조선시대부터였다. 『承政院日記』 영조 38년(1762) 11월 기사에 同春秋 洪樂性이 “臣이 이번에 奉命하여 실록을 考閱한 바, 蠟膾하는 것은 장기간 훼손시키지 않고자 하는 方策이었지만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실록을 펼치면 왕왕 몇 글자 탈락한 곳이 있고, 혹은 全板이 闇黑한 곳도 있어 字跡을 分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變通할 方法이 없지만 신이 살펴본 바는 실로 걱정이 되어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待敎 洪檢도 “同春秋가 이미 상주한 바가 있는데, 이는 史事와 關係가 있으므로 惶公하옵게도 감히 진달합니다. 이번 실록을 高출할 때에 본 것 중에서도 蠟膾한 곳에 간혹 3, 4자 脫落하거나 漫漶한 곳이 있습니다. 막중한 실록이므로 이는 참으로 걱정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의 말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 차후에는 謄寫를 제거하는 일을 正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⁶⁰⁾ 이를 통해 보면 이미 영조년간에도 猨染한 곳에 훼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되었건 연구보존을 목적으로 猨染하였으나 의도와는 달리 실록의 열화를 가속화시키게 된 것이다. 필자가 직접 살펴본 바 적당하게 猨染된 경우는 문제 가 없으나, 과도하게 猨染되거나, 또는 장기간 습기에 노출된 부분에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謄寫 종이의 열화에 미치는 영향 및 기작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進行되고 있다. 그 연구는 손상원인 규명, 謄寫의 열화 특성, 謄寫本 시제품 제작 등이다.⁶¹⁾

58) 鄭小英 등, “조선왕조실록 謄寫본의 보존상태 조사,” 『보존과학연구』 25(2006), 119-132.

59) 김성수,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 현황 및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2005).

60) 『承政院日記』, 英祖 38(1762)年 11月 17日 (乙亥) 원본1212책/탈초본68책(10/10).

61) 조병목, 최태호, 김형진, 엄태진, “세종실록 원지의 섬유 분석 및 초지방법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337-342.

엄태진, 김강재, 조병목, “세종실록에 처리된 謄寫의 성상변화,”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1-6.

조성은, 김용태, 정소영, 조병목, 이종규, “종이변색균류의 배양적 특성 및 화학적 방법에

이들 연구에서는 실록을 간행할 당시에 염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실록에 염랍을 하던 관행이 사라졌고, 숙종대에는 원래 염랍이 되어 있던 부분에만 덧칠⁶²⁾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1335-1567년간만 밀랍본이 존재한다. 그 이후의 실록에서 밀랍본이 자취를 감춘 것은 아마도 이미 당시 밀랍본의 손상이 진행되어 실록의 밀랍본 제작을 중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손상이 심한 밀랍본을 책째로 생지본으로 교체하긴, 부분적으로 새로 필사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필사 교체의 경우 『世宗實錄』까지는 교체하여 넣는 종이에 밀랍처리를 하였으나 『端宗實錄』부터는 생지 그대로 필사하여 교체⁶³⁾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사는 과연 그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첫째, 손상을 입었을 경우 부분적으로 필사하여 수보한 경우 『世宗實錄』까지는 수보한 실록지도 밀랍처리하고 『端宗實錄』부터는 밀랍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딘가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은 태조, 정종, 태종의 실록은 처음부터 활자로 인출하지 않고 필사본만 제작한 실록이고, 『世宗實錄』부터는 활자로 인출하였으나 세종(권136-147)과 세조(권48-49)의 실록은 악보만 활자로 인출하지 않고 처음부터 필사본만 제작하였었다. 즉 태조, 정종, 태종의 실록, 세종과 세조의 악보는 필사본만 제작된 경우이다.

둘째, 임진왜란 이후 실록은 임진왜란 이전 실록의 複印本,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宣祖修正實錄』, 『仁祖實錄』, 『孝宗實錄』의 순으로 간행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제작된 실록은 왜란 이전 실록의 복인본이고, 다음은 『宣祖

의한 변색제거,”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295-303.

강영석, 서진호, “Chamber System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의 미세유출가스 분석,” 『보존과학연구』 31(2010), 9-16.

최경화, 정혜영, 강영석, 조정해, “건식 인공열화 시 밀랍본 시제품의 제분부위별 광학적 특성변화 비교분석,” 『펄프·종이기술』 제43권 제3호(2011. 9), 99.

62) 송기중 등,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74.

63) 박지선, 『조선왕조실록 보존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24.

實錄」이다. 이들 실록의 찬수과정은 의궤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전례를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복인본과 「宣祖實錄」의 실록청 의궤는 산실되었다. 「明宗實錄」 편찬에 記事官으로 참여한 관원으로서 35년 이후에 완성된 복인본에 참여한 관원은 知事 尹承吉뿐이었다.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는데, 「宣祖實錄」 편찬에 참여한 사관도 역시 知事 尹承吉뿐이다. 複印本 실록의 간행에 참여한 관원으로 「宣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領事 奇自獻, 知事 趙挺, 閔夢龍, 尹昉, 尹承吉, 朴承宗, 吳億齡, 同知事 朴樾, 鄭光績, 申湜, 朴震元, 姜弘立, 姜籤, 編修官 尹孝先, 丁好善, 鄭榮國, 尹守謙, 閔德男, 崔東式, 鄭昱, 蘇光震, 朴顏賢, 兪昔曾, 成晉善, 任章, 趙濊 외에도 記注官, 記事官 가운데도 다수가 참여하였다. 「明宗實錄」 간행시 염랍했으면, 복인본 간행시 염랍에 대해 언급했을 수가 있으나 염랍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양이므로 생략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宣祖實錄」을 간행할 때는 정본이므로 염랍해야 했을 것이다. 선초부터 실록을 염랍했었다면 사관이나 匠人들은 전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계승했을 것이다.

셋째, 정족산에 과견된 사관은 실록을 점검해서 형지안을 작성할 때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은 염랍되었으나 복인본 이후는 염랍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조 39년(1606) 복인본의 봉안 이후 숙종 25년(1699)까지 1세기 동안 정족산 실록을 적어도 59차례나 점검하고 형지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전주본은 염랍되었으므로 이후 실록도 염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족산본은 많은 손상을 입은 실록이다. 전주에서 소개시켜 강화에 봉안될 때까지 여러 지역으로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丙子胡亂과 李适의 난으로도 손상을 입었다. 이에 여러 차례 보수하였으므로 <표 1>과 같은 형지안이 전래되고 있다. 현종 5년(1664) 實錄櫃를 바꾸었을 때는 실록궤에 넣는 방습과 방충용의 물건과 약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⁶⁴⁾

64) 康熙三年甲辰十一月初九日實錄曝曬及改櫃形止案. 寫本. [顯宗 5(1664)]. 張28a.

당시에 실록궤에 넣은 방습과 방충용의 물건은 紅紬袱 1件, 白細布甲袋 2件, 上下隔草注紙 2張, 菖蒲芎 2束, 鎖鑰鹿皮纓子, 蓋覆油氈6張付9淨이다.

<표 1> 鼎足山 實錄의 補修狀況

形止案名	史官	調査年度	請求記號
康熙三年甲辰九月初四日實錄曝曬及改粧時形止案	記事官 洪	현종 5(1664)	奎9544
康熙三年甲辰十一月初九日實錄曝曬及改櫃形止案	記事官 李[選]	현종 5(1664)	奎9550
康熙三年甲辰十二月 日實錄改絲 時形止案	記事官 崔	현종 5(1664)	奎9713
康熙四年乙巳九月 日落卷落[張考]出時形止案	記事官 李	현종 6(1665)	奎9552
康熙五年丙午正月十八日實錄贈出奉安後形止案	知事 李尙眞 記事官 崔後尙	현종 7(1666)	奎9689
康熙三十八年己卯三月 日實錄染蠟 及修補時形止案	記事官 朴	숙종 25(1699)	奎9365

이어 병자호란으로 정족산본이 산일되어 춘추관에 수장하였다가 이괄의 난으로 산실된 복인본으로 보충시켜 일건을 이루게 했다. 그러나 효종년간 摩尼山史庫의 화재로 또 일부가 소실되었다.⁶⁵⁾ 이어 落卷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보하였으니 전후 4차에 걸쳐 수보되었다. 1차는 춘추관잔본으로 보완한 때, 2차는 효종 8년(1657), 3차는 현종 6년(1665), 4차는 숙종 4년(1678)이다.

1차는 병자호란 후 정족산본이 산일되자 인조 22년(1644) 봉심하면서 李适의 난 후 鼎足山史庫에 이봉해두었던 春秋館史庫 잔본 28책으로 보충한 때이다. 2차는 효종 8년(1657) 「宣祖實錄」 14책만을 수보한 때이다. 이는 효종 4년(1653) 11월의 화재로 인해⁶⁶⁾ 화상을 입은 실록을 수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극소형이다. 그러나 「宣祖實錄」은 임진왜란 이후 간분이므로 구 전주사고본이 아니다. 3차는 현종 6년(1665)에 대대적으로 수보한 때이다. 이때는 현종 5년(1664) 11월 행검열 李選이 포쇄하고 새로 제작한 실록궤에 바꾸어 넣고 돌아와서 열성실록이 완질이 되지 못하므로 수보해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⁶⁷⁾ 현종 6년(1665)에 필사

65) 「孝宗實錄」影印本. 卷11. 冊35. 656下右. 4年 11月 戊戌.

順治十一年十月日實錄奉安後形止案. 寫本. [孝宗 5(1664)]. 實錄秩.

이 형지안에는 화상입은 실록명 아래에 ‘火災’란 주기가 있다.

66) 「孝宗實錄」影印本. 卷11. 冊35. 656下右. 4年 11月 戊戌.

江華史庫失火 實錄二卷及儀軌諸冊皆燒 命知春秋李厚源 史官安後說等 馳往點檢.

67) 「顯宗實錄」影印本. 卷9. 冊36. 440下左. 5年 11月 戊戌.

“史官李選書啓中 江都所藏列聖實錄 未完卷帙補缺事 禮曹請令本館稟處 自仁祖朝已有此議 而事難輕舉 年且荐凶迄未舉行矣 …”

하여 현종 7년(1666) 1월에 강화사고에 봉안하였다.⁶⁸⁾ 4차는 현종 6년에 낙권임을 발견하고 숙종 4년(1678)에 『光海君日記』 3책을 수보한 것이다. 이 일기도 임진왜란 이후 간본이므로 구 전주사고본이 아니다. 따라서 구 전주사고본으로서 숙종 25년(1699) 이전까지 수보된 시기는 인조 22년(1644)과 현종 6년(1665)이다. 수보된 실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舊 全州史庫本 實錄의 修補本

	春秋館殘本	孝宗8年	顯宗6年		肅宗4年	計
			全卷	部分		
太祖			5	2		7
定宗			1			1
太宗	3		5	5		13
世宗	3		22	49		74
端宗			1	2		3
世祖	2		9	3		14
睿宗	3			1		4
成宗	5		37	43		85
燕山君	5		7	22		34
中宗	6		23	43		72
明宗	1		2	14		17
宣祖		(14)	(6)	(12)		(32)
光海君			(14)	(2)	(3)	(19)
計	28	(14)	112 (132)	184 (198)	(3)	324 (375)

임진왜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으로 입은 손상이 매우 컸었다. 춘추관잔본으로 보충한 28책은 모두 전권이 망실되거나 소실된 것이며, 현종년간 수보본에는 전권수보본도 있고 부분수보본도 있다. <표 2>와 같이 전권수보본은 112책, 부분수보본은 184책으로 부분수보본이 더 많다.⁶⁹⁾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실록이지

68) 『顯宗實錄』 影印本. 卷11. 冊36. 495上右. 7年 1月 庚寅.

“同知春秋李尙眞等 奉安謄書實錄 于江華史庫 實錄落卷落張之數 合三百餘卷 江都實錄始爲稍備 而文宗朝實錄一卷 諸處史庫皆缺 故不得贖出 ….”

만 손상이 있어 효종년간에 『宣祖實錄』 14책, 숙종년간에는 『光海君日記』 3권을 수보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후 숙종초까지 손상된 실록의 수보에 노심초사하였던 것이다. 일련의 수보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실록의 보존대책을 수립한 것이 염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형지안을 살펴보면 숙종 25년(1699) 3월에 작성된 『康熙三十八年三月日實錄染蠟及曝曬修補時形止案』(奎9365)을 통해 염랍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형지안은 봉교朴[?]이 염랍과 수보를 한 후 작성한 것이다.⁷⁰⁾ 숙종 25년(1699)의 형지안을 작성한 사관은 봉교朴[?]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承政院日記』를 통해 朴弼明임을 알 수 있다. 이 형지안의 서명은 염랍 및 수보 형지안이지만 본문 내용에는 염랍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落卷新謄’(顯宗年間 修補本), ‘樣小’(春秋館殘本), ‘赤裳亦落’(文宗 권11), ‘疊書’(複本, 春秋館殘本) 등이 주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실록각을 수개한 때인 숙종 27년(1701)에 작성된 형지안에 의하면 蠟謄, 蠟印, 新謄 등의 주기가 있어서 당시 염랍한 부분을 알 수 있다.⁷¹⁾

朴弼明에 대해 『朝鮮實錄』과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바 숙종 24년(1698) 4월 12일부터 숙종 25년(1699) 3월 24일까지는 史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 자세하게는 숙종 24년(1698) 5월 5, 11-18, 20일에는 記事官으로 기록되어 있고, 숙종 25년(1699) 2월 25일, 3월 10일에는 世子侍講院의 정7품 관직인 兼說書, 3월 24일에는 奉教로 나타난다. 숙종 25년(1699) 3월 24일에는 奉教 朴弼明이 실록을 염랍하는 일로 江華府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봉교는 예문관의 정7품의 실직으로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직하는 사관이다. 따라서 朴弼明은 춘추관의 기사관으로서 江華府에 실록의 염랍을 감독하기 위해 나간 것이다. 朴弼明의 문집이나 기록의 전래가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朴弼明이 염랍할 때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후일 자세한 기록이 발견되길

69) 裒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대구: 태일사, 2002), 234.

70) 康熙三十八年三月日實錄染蠟及曝曬修補時形止案. 寫本. [肅宗 25(1699)] (奎9365-2).

71) 康熙四十年辛巳十月 日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寫本. [肅宗 27(1701)] (奎9462).

72) 承政院日記. 肅宗 25年 3月 24日(癸巳) 원본384책/탈초본20책.

기대한다.

또한 전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조선실록 전주사고본(태조~명종) 복본화사업을 2012년 완료했는데, 이때도 구 전주사고본만 복원하였다. 이 복본화사업은 과학적인 품질분석을 통해 실록이 제작된 당시와 같은 한지에, 당시의 제작 형태로 그대로 복원하고자 한 사업이다.⁷³⁾ 물론 전주시가 주관하였기 때문에 구 전주사고본만 복원하였겠지만, 이와 같이 현대에도 구 전주사고본에 대해서는 한층 더 중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구 전주사고본에 대해서는 한층 더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록에 염랍한 것은 실록 관리의 일부분이다. 이때 원래 염랍이 되어 있던 구 전주사고본에만 덧칠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염랍이 과도하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이전에 실록에 염랍하였다면 안정기에 인출된 역대의 실록에도 염랍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인출본에는 염랍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 실록만 재난을 면하게 되자 실록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복본제작을 도모하고, 수보하다가 이때 구 전주사고본만 특별 관리하기 위해 염랍한 것으로 추정한다.

4. 結 言

「朝鮮實錄」은 조선 25대 472년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언어, 문학, 역사 등 각 방면에 걸쳐 당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조선시대 철저한 기록문화의 양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부터 실록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朝鮮實錄」을 관리한 양상으로 우선 史草, 史閣과 實錄의 관리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구전주본

73) [cited 2012. 08. 01. 11:30].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2/08/01/09040000AKR20120801077400055.HTML>>.

실록의 연람에 대해 살펴보았다.

史草의 관리는 사관의 주된 평상업무로 時政記와 史草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사관은 時政記, 房上日記와 家藏史草 등을 작성하였다. 時政記와 房上日記는 사관이 매일 승정원과 춘추관에 직속하면서 왕의 청정과 경연에 입시하여 작성하거나 각급 기관에서 보내온 문건을 정리한 사초이다. 가장사초는 당대 인물 즉 왕을 위시하여 대신들의 헌부, 득실과 관계된 내용을 공의를 토대로 상세하게 직서한 것으로서, 직무상의 기록이지만 공개하지 않고 사사로이 수장하는 사초이다. 또한 경외 대소 관청의 검직사관이 각각 시행사로서 정령과 관계있고 후세에 권고와 훈계가 될 만한 문건을 적어서 보내온 사초도 관리하였다. 이들 사료는 실록편찬의 필수적인 자료였다.

史閣의 관리는 실록을 봉안한 경사고와 외사고를 관리한 것을 말한다. 세종 27년(1445) 4사고 제도가 완비되었을 때 외사고는 충주, 성주, 전주의 읍성내에 사각을 건립하였으므로, 사고를 지방관아에서 수호했고, 성내에 있었으므로 수호 군사의 수가 적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는 사각을 심산에 건립하였으므로 <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시일의 경과로 차차 해이해지게 되어 승려, 역졸과 군사는 그 신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는데도 신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승군도 위전을 뺏기게 되었다. 더구나 흉년이 들면 승도는 이산하게 되어 사찰은 황폐되어 사고는 막중하나 수직할 승도가 없게 되었다. 숙종 43년(1717)에 다시금 <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였다. 이때 마련한 절목에서도 인조 8년(1630)의 규정과 같아 사목에 따라 수직하고 오로지 수호에만 전념하게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實錄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曝曬하면서 點檢하였고, 수시로 奉安, 奉審, 修補, 移安, 還安, 取來, 考出, 臚出, 實錄閣을 修改하면서 曝曬하면서 點檢하였다. 사각의 문을 封印하기 전에 반드시 수장서적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여 形止案을 작성해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조선시대 사고의 개고는 도합 634회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래되는 형지안은 전주사고 2책, 해주 사고 1책, 향산사고 12책, 오대산 102책, 적상산 104책, 강화사고 142회, 태백산 99책, 도합

462책으로 강화사고의 형지안이 가장 많이 전래되고 있다.

구 전주사고본 실록의 관리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改粧, 改絲, 改櫃, 染蠟한 것이다. 이 실록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괄의 난을 거치는 과정에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수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染蠟은 실록에 蜜蠟을 입힌 것으로 우리나라 서적 가운데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이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염랍된 실록도 훼손되었고, 훼손이 확인된 것은 이미 영조 38년(1762)이었다. 근래에 염랍된 실록도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밀랍이 종이의 열화에 미치는 영향, 손상원인 규명, 밀랍지의 열화 특성, 밀랍본 시제품 제작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실록편찬에 있어서 종전의 『實錄廳儀軌』를 참조해서 편찬했을 것이다. 실록의 찬수과정은 의궤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의궤가 전래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편찬에 동원되었던 사관은 생존해 있었으니, 知事 尹承吉은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한 관원으로서 35년 이후에 완성된 복인본과 『宣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복인본 간행에는 사관 외에 동원되었던 장인들도 상당수 생존해 있었을 것인 바 그 전례를 따를 수 있었을 것이다. 복인본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宣祖實錄』은 정본이므로 염랍해야 했을 것이다. 선초부터 실록을 염랍했었다면 사관은 전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계승했을 것이다. 그러나 『宣祖實錄』은 염랍되지 않았으므로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도 염랍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족산에 파견된 사관은 실록을 점검해서 형지안을 작성할 때 임진왜란 이전의 실록은 염랍되었으나 복인본 이후는 염랍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조 39년(1606) 복인본의 봉안 이후 숙종 25년(1699)까지 1세기 동안 정족산 실록을 적어도 59차례나 점검하고 형지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전주본은 염랍되었으므로 이후 실록도 염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족산본은 인조 22년(1644), 효종 8년(1657), 현종 6년(1665), 숙종 4년(1678)

4차례에 걸쳐 수보되었다. 이 가운데 구 전주사고본으로서 숙종 25년(1699) 이전까지 수보된 시기는 인조 22년(1644)과 현종 6년(1665)이다. 이외에도 현종 5년(1664)에 3차례에 걸쳐 改粧, 改櫃, 改絲하였으며, 현종 6년(1665)에는 落卷과 落張을 考出하여 이듬해 적상산에서 등출해서 정족산에 봉안하였다. 이에 마지막으로 숙종 25년(1699)에 구 전주사고본을 謄寫한 것이다. 謄寫할 때의 사관은 奉敎 朴弼明이었다. 朴弼明의 문집이나 기록의 전래가 확인된 것은 없어서, 朴弼明이 謄寫할 때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원래 謄寫가 되어 있던 구 전주사고본에만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謄寫가 과도하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 실록만 재난을 면하게 되자 실록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복본제작을 도모하고, 수보하다가 이때 구 전주사고본만 특별 관리하기 위해 謄寫한 것으로 추정한다. 후일 자세한 기록이 발견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江原道江陵府誌』. 寫本. [年紀未詳].
- 『江華府邑誌』. 寫本. [年紀未詳].
- 『經國大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 『高麗史』.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 『輿地圖書』.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73.
- 『仁祖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 『傳燈寺本末寺誌』.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8.
- 『朝鮮寺刹史料』. 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 『增補文獻備考』.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4290.
- 『孝宗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 康熙四十年辛巳十月 日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寫本. [肅宗 27(1701)].

- 康熙三年甲辰十一月初九日實錄曝曬及改櫃形止案. 寫本. [顯宗 5(1664)].
- 康熙三十八年三月日實錄染蠟及曝曬修補時形止案. 寫本. [肅宗 25(1699)].
- 乾隆四十三年戊戌二月日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寫本. [正祖 2(1778)].
- 權近. 『陽村集』. 木版本. [顯宗 13(1672)].
- 김성수.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 현황 및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005).
- 茂州縣. 崇禎五年六月 日全羅道茂州縣赤裳山城條陳成冊. 寫本. [仁祖 10(1632)].
- 박지선. “조선왕조실록 보존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 司馬光.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 上海: 古籍出版社, 1987.
- 山西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合編. 『應縣木塔遼代秘藏』. 文物出版社, 1991.
- 徐居正. 『東文選』. 影印本. 서울: 慶熙出版社, 1966.
- 송기중 등.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 順治十四年丁酉九月日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寫本. [孝宗 8(1657)].
- 順治十一年十月日實錄奉安後形止案. 寫本. [孝宗 5(1664)].
- 崇禎七年六月日[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寫本. [仁祖 12(1634)].
- 劉煦. 『舊唐書』. 서울: 景印文化社, 1977.
- 鄭小英 등. “조선왕조실록 밀납본의 보존상태 조사.” 『보존과학연구』 25(2004).
- 조병목, 최태호, 김형진, 임태진. “세종실록 원지의 섬유 분석 및 초지방법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 趙秉瑜. 『赤城誌』. 寫本. [高宗 35(1898)].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 옛 책의 아름다움』.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5.

